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3586,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진형건설(주)(구자화)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주)유신(성낙일) ④ (주)평화엔지니어링(권재원) ⑤ (주)동일기술공사(황주환, 김수보, 강창호)

나. 전화번호 : ① 031-983-6755 ② 02-3433-7731 ③ 02-6202-0590 ④ 031-420-7831 ⑤ 02-3400-5612

2. 명칭 : 힌지형 링크 연결을 통해 소음을 저감하고 이물질 차단판이 구비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 하기 위해 강제링크를 구비하여 강제링크를 서로 회전힌지 형태로 연결하고 연결된 링크는 회전힌지를 통해 회전거동하여 교량의 신축거동을 수용하는 신축이음공법으로 충격과 소음을 감소를 실현시키며 링크의 회전거동으로 중·횡으로 거동이 가능하다, 특히 링크하부에 강제로 구성된 이물질 차단판을 구비해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신축이음 공법이다.

<범위>

강제링크의 회전거동으로 교량의 신축거동을 수용하며 신축용량 35mm~800mm까지 적용된다. 강제링크는 힌지 형태로 서로 연결되고 강제링크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을 구비하는 신축이음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